	절 차 서	문 서 번 호	OQS-P841
	인증표시의 사용 및 홍보	Edition/Rev.	1 / 3
		페 이 지	1 / 4

1. 목적

본 절차서는 OQS의 인증조직이 인증표시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인증표시의 사용 및 홍보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정의

3.1 인증표시(인증마크)

인정기관의 인정마크와 OQS 인증마크를 총칭하여 “인증마크”라 하며, “인증표시”와 동일용어로 간주되며, 본 절차서에서는 필요에 따라 본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인증부서장

인증표시의 사용 및 홍보에 대한 관리

4.2 심사팀

사후관리 및 갱신심사 시 인증조직이 인증표시의 사용 및 홍보방법에 대한 활용이 적절한지 확인

5. 인증표시의 사용 및 홍보 절차


5.1 일반사항

- (1) 인증마크는 인정기관의 마크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인정기관 마크와 OQS 인증마크를 동시에 표기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 인정된 인증수행범위 인증서 발급 시에는 인정기관마크는 표기할 수 없으며 OQS인증마크만 표기할 수 있다.
- (2) 인증등록조직(이하 인증조직이라 한다)이 인증서 및 인증사실을 홍보할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상, 인증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사항

표시·광고 행위 금지사항	비고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2) 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4) 비방적인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 (3) 인증조직이 인증마크 사용과 관련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OQS에 서면 질의 후 승인을 득하고 사용해야 한다.

	절 차 서	문 서 번 호	OQS-P841
	인증표시의 사용 및 홍보	Edition/Rev.	1 / 3
		페 이 지	2 / 4

5.2. 인증서의 사용 및 홍보기준

인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축소, 확대가능)을 게시물로 활용하거나, 인쇄하여 홍보와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5.3. 인증표시의 사용 및 홍보기준

인증조직은 문서, 송장, 광고 등에 인증표시, 인증기관명, 인증표준, 인증번호 등을 사용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임을 홍보할 수 있다. 단, 다음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배되는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5.3.1 인증조직은 OQS로부터 발행된 “인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내에서 인증표시의 사용이 허용된다.

5.3.2 인증표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증표시는 원본을 동일 비율로 확대·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증표시의 크기는 최소한 가로 15mm 이상, 세로10mm이상이 되어야 한다.

5.3.3 인증표시 표기 기준


인증표시는 아래 “표1 인증/인정 마크의 사용 예시”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인증/인정 마크 하단에 지정번호를 함께 표기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좌우 대칭의 경우 - 왼쪽에 인증기관 마크, 오른쪽 인정마크
- (2) 상하 대칭의 경우 - 위쪽에 인증기관마크, 아래쪽에 인정마크

표1 : 인증/인정 마크의 사용 예시

구분	인증/인정 마크 예
(1) 좌우 대칭의 경우	 인증서 번호
(2) 상하 대칭의 경우	 인증서 번호

주1) 다만, 미 인정된 인증수행범위 인증서 발급시에는 인정기관마크는 표기할 수 없으며 OQS인증마크만 표기하여야 한다.

	절 차 서	문 서 번 호	OQS-P841
	인증표시의 사용 및 홍보	Edition/Rev.	1 / 3
		페 이 지	3 / 4

5.3.4 인증표시 기준 상세

인증마크 및 인증문구는 「제품의 포장」 또는 「단위포장의 포장」에 사용될 수 있으나, 제품 또는 단위포장에는 사용될 수 없으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한 경우

- ① 제품의 포장(제품 또는 단위포장에는 사용 불가)
제품의 안전 또는 유통의 편의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포장
- ② 광고 또는 홍보물
산업분류상 인증기업의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명판, 명함 및 교재, 편지지, 브로셔, 문서, 송장, 인증서 및 수료증 등의 인쇄물 또는 제작물 또는 기타 광고 수단

(2) 인증마크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① 제품 또는 단위포장
제품 유통을 위한 최소 단위의 품목과 담배갑, 통조림, 음료수캔 등의 용기와 같이 제품 단독으로는 유통이 불가능한 단위포장
- ② 거래 샘플 또는 기타 제품 적합성에 관한 진술서
- ③ 인증 조직/클라이언트의 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
- ④ 깃발, 건물 또는 차량

(3) 인증문구의 사용 기준

인증문구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① 인증 조직/클라이언트의 식별 정보(예: 브랜드나 회사명)
- ② 경영시스템 유형(예: 품질, 환경) 및 해당 표준
- ③ 인증서를 발행한 인증기관


(4) 활용대상 별 사용기준 예시

구 분	인증마크	문구포함
제품 및 단위포장, 유형라벨(Type label), 식별판	X	X
제품운송에 사용되는 대형 박스 등 (제품포장, 단위포장의 포장)	X	○
Instruction Manual	○	○
Catalog, 광고물, 명함	○	○
인증조직의 사용문서(Fax용지, 우편봉투 등)	○	○

※ 범례 : ○ : 사용가능, X : 사용불가

5.3.5 기타 인증표시의 사용/제한 기준

- (1) 인증을 받은 자는 문서, 송장, 광고 등에 인증표시, 인증기관명, 인증표준, 인증번호 등을 사용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임을 홍보할 수 있다.
- (2)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한 제품에 인증표시, 인증기관명, 인증표준,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인증기관이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인증표시의 오용은 인증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인증조직이 광고, 카달로그 등에 인증표시를 잘못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시정조치, 인증서 회수, 정정광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인증을 받지 않은 조직이 인증을 받았다고 허위로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별표]과징금 부가기준에 의거하여 처분된다.
- (5) 제품포장은 제품을 해체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동반되는 정보는 분리하여 사용하거나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절 차 서	문 서 번 호	OQS-P841
	인증표시의 사용 및 홍보	Edition/Rev.	1 / 3
		페 이 지	4 / 4

5.3.6 IAF MLA 마크의 사용 제한

- (1) 인증조직은 IAF MLA 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 (2) 인증기관의 IAF MLA 마크 사용에 대한 기준은 “인정기준 적용지침 - 제1부 : KAB 지침 KAB-A-01”에 따른다.

5.4 인증조직의 인증표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5.4.1 인증표시 사용실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요구

- (1) 심사팀은 사후관리심사 시 인증조직의 인증서, 인증표시, 마크의 사용상태를 확인한다.
- (2) 확인결과 광고, 선전, 카다로그 등에 잘못 언급하고 있거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도록 사용된 경우 ‘인증심사 운영 절차서’에 따라 부적합보고서(IF921-08)를 발행하고, 심사보고서와 함께 인증기관에 제출한다.

5.4.2 시정조치 결과 통보

인증조직은 부적합보고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OQS에 제출해야 한다.

5.4.3 시정조치 결과의 검증

- (1) 심사팀장은 시정조치 결과의 적절성 검토 및 효과성을 검증하고 부적합보고서에 서명 후, 인증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인증조직이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재차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5.4.4 시정조치 결과 미흡 시 조치사항

- (1) 5.4.3항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인증조직의 시정조치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 ① 인증표시, 마크의 사용 중지
 - ② 인증표시 및 인증마크의 사용취소
 - ③ 인증범위 축소,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
- (2)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 후에도 인증표시 및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마크도용에 대한 법적 처리와 비용의 청구를 실행할 수 있다.

6. 인증취소시 인증서 회수절차

검증부서장은 인증등록자가 5.4.4항에 해당하여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인증서”를 회수한다.

- (1) 인증등록자에게 인증서 회수요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회수한다.
- (2) 회수된 “인증서”를 접수하여 “인증서” 전면에 “폐기” 식별 표시하고 인증조직파일에 보관한다.
- (3) 부도 또는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할 시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여 인증조직 화일에 보관한다.